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9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1229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201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2,270,840원, 가산금 177,120원, 농어촌 특별세 681,250원, 가산금 20,430원의 체납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9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외에 명백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측은 당심 변론 종결 후에 참고서면을 통해 G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판결하여 줄 것을 참고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G에 대한 증인신청은 뒤늦게 행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G이 수사기관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 직전에 분명히 피의자 H 및 고소인(C)이 교환에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업무만 대행해 준 것이라고 변소(갑 제9호증)'하였던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29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김형작

판사 박준범